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601

발의연월일: 2022. 7. 22.

발 의 자:김정호·정춘숙·김윤덕

허종식 • 박상혁 • 어기구

김병욱 · 임종성 · 위성곤

신현영 · 신정훈 · 서동용

윤후덕 • 윤준병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.

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공급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연장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 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원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음.

이에,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(안 제85조의6제1항 및 2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5조의6(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제85조의6(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의 감면) ① 「사회적기업 육 의 감면) ① -----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202 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년 12월 31일-----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과세연도(인증을 받은 날부 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 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②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(2) -----

재활법 . 제22조의4제1항에 따 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 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인 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 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 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③ ~ ⑧ (생 략)

2027년 12월 31일
③ ~ ⑧ (현행과 같음)